

제2026-58호 2026년 7월 22일(수)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 화 합 열 린 도 시 인 재 육 성 산 업 도 시 문 화 예 술 복 지 도 시 해 양 관 광 휴 양 도 시 기 후 변 화 선 도 도 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2289호 2026년도 자랑스러운 여수인 추천, 접수 공고(연장)
- 여수시 공고 제2026-2292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남동종합건설(주)
- 여수시 공고 제2026-229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78호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여수시 규칙 제879호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여수시 규칙 제880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 - 2289호

공 고

(「2026년도 자랑스러운 여수인」 추천)

「여수시 자랑스러운 여수인 선정 운영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자랑스러운 여수인 선정을 위한 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연장) : '26. 7. 22. ~ 8. 7.

※ 당초 : '26. 5. 22. ~ 7. 21.

2. 선정기준

가.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아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자

1) 관 계 : 2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2) 법조계 : 부장급 이상 전·현직 판·검사

3) 재 계 : 기업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학 계 :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권위자

5) 군 인 : 전·현직 장성

6) 체육인 :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

7) 문화·예술인 : 유명작가, 배우, 언론인, 기타 예술인 등

8)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나. 제외대상 :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대상자 추천 : 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5.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7)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자랑스러운
여수인 담당자

6. 제출서류

가. 추천서 2부

나. 이력서 2부

다. 공적조서 2부

라.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마.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7. 대상자 선정 : 자랑스러운 여수인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8. 시 상 : '26. 10. 15.(2026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7. 21.

여 수 시 장

【붙임1】 추천서식

추천서

<추천대상자>

추천부문		본 적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상기인은 여수지역 출신으로서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여수시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있기에 자랑스러운 여수인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서류 1. 이력서 2부
2. 공적조서 2부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026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진)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만 세)
주 소					
등록기준지					
E-mail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뒤쪽)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남동종합건설(주) 임승규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새터로 63-1, 3층
-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 0076303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실내건축공사업	여수-26-나-06	실내건축공사	2026. 7. 21.

2026 년 7 월 21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6 -229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1715	해조류 양식	수하식	5	화정 개도	2016.11.02. 2026.11.01.	여수시 화정면	월향어촌계	대체개발
11862	패류 양식	수하식	15	돌산 금봉	2021.06.26. 2031.06.25.	여수시 돌산읍	서*의 외7	대체개발
12038	해조류 양식	수하식	5	남면 우학	2026.08.22. 2036.08.21.	여수시 남면	학동어촌계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6. 07. 21.

여 수 시 장

2026년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 월 22 일

여 수 시 장 서영복



여수시 규칙 제878호

붙임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 중 “매년 1월에”를 “연 1회”로, “취하여야 한다”를 “취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생략)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u>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에 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u>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u>매년 1월에</u>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u>취하여야 한다.</u>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 ----- ----- <u>연 1회</u> ----- ----- ----- <u>취</u> <u>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u>
제18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8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무</u>

제21조(통합배차지원) ① (생략)	<u>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1조(통합배차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	--

2026년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 월 22 일

여 수 시 장 서영복



여수시 규칙 제879호

붙임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79호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조사를 시작하기 15일”을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u>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u>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u>법 제83조제1항에</u> <u>서 정한 기일</u> ----- ----- ----- ----- -. ----- ----- ----- ----- ----- ----- ----- -----.		

2026년 제6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 월 22 일

여수시장 서영호.



여수시 규칙 제880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여수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여수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조(「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의 개정)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4조(「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의 개정) 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함)전라남도지사”를 “한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7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7조(업무지정)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업무지정) ① ----- ----- ----- -----.
1. 감사부서	1.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 <u>전라남도</u> 와의 협약	라.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마. ~ 아. (생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2.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현행	개정안
제16조(처분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① ----- ----- -----.
1.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 <u>전라남도</u> 또는 여수시의 훈령, 예규, 지시 등에 위반한 때	1.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u>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r> <td style="width: 10%;">결</td><td style="width: 20%;">담당자</td><td style="width: 20%;">팀장</td><td style="width: 20%;">과장</td><td style="width: 30%;">국장</td></tr> <tr> <td>재</td><td></td><td></td><td></td><td></td></tr> </table> 부과취소(경정)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세목</th><th rowspan="2">연도 / 기분</th><th colspan="2">당초</th><th colspan="2">취소</th><th colspan="2">경정</th><th colspan="2">차액</th></tr> <tr> <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auto;"> <tr> <td style="width: 10%;">결</td><td style="width: 20%;">담당자</td><td style="width: 20%;">팀장</td><td style="width: 20%;">과장</td><td style="width: 30%;">국장</td></tr> <tr> <td>재</td><td></td><td></td><td></td><td></td></tr> </table> 부과취소(경정)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세목</th><th rowspan="2">연도 / 기분</th><th colspan="2">당초</th><th colspan="2">취소</th><th colspan="2">경정</th><th colspan="2">차액</th></tr> <tr> <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는 시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재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u>전라남도지사</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 -----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
제16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u>전라남도지사</u> 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 ----- <u>전남</u> <u>광주통합특별시장</u> ----- -----.

5. 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생략)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u>한함</u>) <u>전라남도지사</u> ,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2조(적용범위) ----- -----. 1.·2. (현행과 같음) 3. ----- ----- <u>한함</u>) <u>전남광주통합</u> <u>특별시장</u> ----- ----- -----.

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 라. (생략) 마. <u>전라남도지사</u>,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영업 바. ~ 자. (생략)	----- ----- ----- ----- 4.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u>----- ----- ----- ----- ----- ----- ----- ----- ----- 바. ~ 자. (현행과 같음)
---	---

6.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u>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u>에 둔다.	제2조(위치) ----- ----- ----- ----- <u>전</u> <u>남광주통합특별시</u> ----- -----.

7.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4] <u>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u>(제6조제2항 관련) -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별표 4] <u>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u>(제6조제2항 관련) -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